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도 용역연구과제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12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본 연구보고서는 2022년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
연구과제로서 연구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

연구진

이 명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선 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 지 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목차

I. 서론	1
II.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현황 분석	10
III.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27
IV. 등록기관의 선거여론조사 자료 품질 향상 방안	41
V. 결론	47
참고문헌	56
부록	57

표 목차

<표 I-1>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9
<표 II-1> 현 등록기관의 지역 분포	10
<표 II-2> 현 등록기관의 설립시기	11
<표 II-3> 조사시스템 현황	12
<표 II-4> 분석전문인력 수 분포	13
<표 II-5> 분석전문인력 수 기술통계량	13
<표 II-6> 일반 직원 수 기술통계량	13
<표 II-7>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 기술통계량	14
<표 II-8> 조사시스템*분석전문인력*조사실적 교차표	14
<표 II-9> 분석전문인력 1명인 등록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15
<표 II-10> 분석전문인력 2명인 등록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16
<표 II-11> 분석전문인력수별 현 등록기관의 등록 유지기간	17
<표 II-12> 사회조사분석사1급과 2급 비교	18
<표 II-13>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20
<표 II-14> 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용조사 실시 현황	20
<표 II-15> 등록 유지기간	21
<표 II-16> 등록 취소사유	22
<표 II-17> 등록부터 취소까지 존속기간	22
<표 II-18> 전문가 FGI의 핵심 내용	25
<표 V-1>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록요건 강화)	51
<표 V-2>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록취소 요건 확대) ..	52
<표 V-3>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교육 의무화)	53
<표 V-4>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 방안	54

그림 목차

<그림 IV-1> 통계품질진단 절차	44
<그림 IV-2> 학술지 평가점수와 판단 기준	46

I. 서론

1. 연구 배경

- 신뢰성 높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산출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대응이 시행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함
- 아울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 혹은 보도하려는 여론조사기관과 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함¹⁾
- 조사기관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실, 영세기관 문제는 여전한
- 부실, 영세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조사경험자 1명만으로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의견상으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이 된 것이 객관적이고 품질이 높은 조사결과를 산출하는 인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음
- 법적 제재로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인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 2 제3항은 등록신청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규정함. 첫째, 전화면접시스템 혹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둘째,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셋째, 여론조사 실시 실적이 10회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넷째,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둘 것.

한 일정기간 재등록 신청 불가,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 있음

- 동시에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법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됨
- 실제로 반복적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사기관의 난립 문제가 상당 부분 존재함
- 이에 따라 언론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

2. 연구 목적

- 앞서 언급한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의 제한점을 해결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등록된 조사기관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작업은 보다 객관적인 개선과 보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
-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조사기관 등록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의 주요 요소인 등록요건, 등록취소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인 규제와 동시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조사시스템,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등 몇 가지 요소를 검토할 수 있음
- 등록취소요건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등록기관 퇴출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등록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등록 취소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등록취소요건도 강화하는 동시에 징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선거여론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요건 강화와 등록취소요건 확대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규제강화라면,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지식 축적 노력 같은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장기적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조사기관 등록 강화와 취소 확대를 통한 규제가 효과성이 높지만, 각종 규제 완화라는 행정의 전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시민사회와 언론계를 통한 자율적인 조사기관과 여론조사 자료의 품질 판단을 통한 개선 방안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구내용

가. 현황 분석: 등록기관 현황과 상황 검토

-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조사업체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기관으로 등록,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2017년부터 시행함
- 등록제 이후, 기존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조사기관이 다수 존재함

- 이에 따라 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등록기관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현황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함
- 2022년 9월 30일 기준, 91개 조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현행 등록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3.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 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 여론조사는 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4.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 등록된 조사기관의 설립연도, 조사시스템, 상근직원 수, 여론조사 실적 등 등록신청 요건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함
- 이를 통해 등록조사기관의 전문성 관련 실태를 파악함

나. 등록제도 강화 방안: 규제 일반론,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요건 확대, 등록 교육 의무화

- 민주주의의 질을 유지, 제고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산출은 대단히 중요함
-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기관 등록제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 혹은 보도하려는 여론조사기관과 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로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핵심적인 규제임
- 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politics of regulation)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여론조사 규제는 규제에 의한 편익이 국민 전체에 넓게 분산되어 있고, 규제의 비용은 피규제기관에 좁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업가적 정치’ 범주에 속하는 규제행위의 가장 큰 위험(risk)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즉, 조사기관등록제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기관들)이 조직화하여 강력한 반대 활동을 꾀하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위험은 그리 크지 않음. 즉, 기득권의 수호를 위한 피규제 주체들의 반발은 현행 규제정책의 유지 또는 변경(강화)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음
- 한편, 해당 규제로 산출되는 편익은 공정한 선거 규칙의 유지, 사실 기반 정보의 제공 및 유통, 좋은 후보의 당선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질 제고 등으로 국민 전체 및 정치체제 전반의 차원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음
- 아울러 적절한 규제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민주주의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로운 효과를 규제의 ‘기회비용’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규제의 도입 혹은 강화로 실현될 추가 편익이라고 볼 수도 있음
- 특히 잘못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말미암아 당락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후보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유권자 표심의 동요, 여

론의 혼돈,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전반적인 냉소와 무관심 등은 민주주의의 질을 감쇄시킴

- 잘못된 정보의 유통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유포는 민의가 대표되는 투표과정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대의체계의 공신력을 저하시킴
-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일정 부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부실 또는 영세기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상황의 존재는 선거여론조사 품질의 하락과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수시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은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규제관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활동”(이혁우 2021, 101)으로 정의됨
- 현행 조사기관등록제는 강화가 불가피해 보임. 규제가 불충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해당 제도와 관련한 규제관리는 규제 내용의 적정성, 비례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현재 규제 수준이 적정인가’(이혁우 2021, 205)가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야 함
- 현행 규제는 동종으로는 최초로 시행된 규제로서 일종의 파일럿(예행 규제)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이제 규제 도입 후 그 효과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함
- 현행 규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의 수, 범위의 제한 등을 주된 방법으로 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제의 강화는 1) 등록요건 강화, 2) 등록취소요건

확대, 3) 등록기관 의무교육 이수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음

- 첫째, 등록요건 강화 방안으로는 예컨대 1) 분석전문인력 및 상근 직원 숫자의 확대(현행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함), 2) 조사방법별 시스템 최소사양 기준 명시(현행 전화면접조사시스템 혹은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춰야 함), 3) 등록된 조사기관의 존속요건 추가(현행 여론조사 실시 실적 횟수와 연간 매출액, 사무실 등이 규정됨) 등이 있음
- 둘째, 등록취소요건 확대 방안으로는 예컨대 1) 여론조사 용역 하도급 금지(위반시 등록 취소), 2) 등록취소 요건 추가(현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정됨), 3) 재등록 제한 요건 추가 혹은 재등록 금지 기간 연장(현행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4) 영업정지 처분 제도 도입 검토 등이 있음
- 셋째, 등록기관 의무교육 이수 방안으로는 우선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수강의무자, 미이수시 받게 될 불이익, 이수실적 등록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안내,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 방안: 장기계획, 외부전문단체를 통한 객관적, 자율적 평가제도 도입

- 등록제도에 대한 강화 방안과 더불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향상 방안 검토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선거여론조사는 응답자 선정 과정, 응답의 정확성, 설문 관리 등 다방면에서 조사결과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했음
- 또한, 단기적으로는 조사기관 등록강화와 취소 확대를 통한 규제가 효과성이 높지만, 각종 규제 완화라는 행정의 전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와 언론계를 통한 자율적인 조사기관과 여론조사 자료의 품질 판단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표 I-1>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단기와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임

<표 I-1>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단기	중장기
등록요건 강화	분석전문인력 기준 상향, ARS와 전화면접시스템 기준 강화, 실적 및 매출액 기준 강화	
등록취소 요건 확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혹은 등록요건 미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행위시 등록취소와 재등록 요건 강화, 하도급 제한	
등록기관 교육 의무화	팀장(대표)급/실무자 교육 의무화	
사후 검증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체 검증 인력과 예산 확대
품질진단/인증제		제3기관을 통한 품질진단과 인증제

II.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현황 분석

1. 정량분석

- 정량분석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총 91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단, <표 II-14>는 제외

가. 현 등록기관의 지역 분포와 설립시기

- <표 II-1>은 현재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냄
- 서울 지역의 등록기관이 전체의 72.5%를 차지함
- 수도권 지역이 76.9%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이 23.1%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 현 등록기관의 지역 분포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	66	72.5
경기	4	4.4
대전	2	2.2
대구	3	3.3
부산	2	2.2
경남	4	4.4
경북	3	3.3
전남	1	1.1
전북	1	1.1
광주	3	3.3
강원	1	1.1
충남	1	1.1
합계	91	100.0

- <표 II-2>를 통해 현재 등록된 기관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82.4%를 차지함
- 특히, 2010년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5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등록기관 중 20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관은 17.6%로 낮은 비중을 나타냄

<표 II-2> 현 등록기관의 설립시기

	빈도	퍼센트
2000년대 이전	16	17.6
2000-2010년 사이	26	28.6
2011-2022년 사이	49	53.8
합계	91	100.0

나. 현행 등록신청 요건별 현황

- 현행 등록신청 요건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다음의 <표 II-3>는 조사시스템 현황을 나타냄
- 먼저, 조사시스템의 경우 ARS조사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약 46%를 차지하고 있음
- 나머지 전화면접조사업체와 전화면접과 ARS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가 각각 26.37%와 27.47%를 차지함
- 한편, ARS조사업체의 절반 이상(66.7%)이 조사시스템을 임대하고 있고, 31%가 자체보유하고 있음
- 전화면접조사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66.7%)이 조사시스템을 자체보유하고 있고, 33.3%가 임대하고 있음

<표 II-3> 조사시스템 현황

(단위: 빈도, %)

		조사시스템			합계
		전화면접	ARS	전화면접과 ARS	
임대여부	임대	8 (33.3)	28 (66.7)	12 (48.0)	48 (52.7)
	자체보유	16 (66.7)	13 (31.0)	7 (28.0)	36 (9.6)
	임대와 자체보유	0 (0.0)	1 (2.4)	6 (24.0)	7 (7.7)
합계		24 (100.0)	42 (100.0)	25 (100.0)	91 (100.0)

- 다음으로 <표 II-4>부터 <표 II-7>까지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전문인력 수가 1명인 업체가 52개로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분석전문인력 수가 2명인 업체는 15.4%임
- 분석전문인력 수가 3명 이상인 업체는 27.5%에 불과함
- 현재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91개 업체의 분석전문인력 수 평균은 2.37명임
- 분석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등록요건에 맞추어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석전문인력 1명을 두는 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분석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평균이 19.05명, 표준편차가 46.93명, 최소 0명, 최대 285명으로 업체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은 평균이 21.43명, 표준편차 47.63명, 최소 3명, 최대 291명임
- 또한,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가 3명인 경우는 전체

의 40.7%를 차지함. 91개 등록업체 중 40.7%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4> 분석전문인력 수 분포

분석전문인력 수	빈도	퍼센트
1	52	57.1
2	14	15.4
3	11	12.1
4	3	3.3
5	5	5.5
6	3	3.3
7	1	1.1
13	1	1.1
28	1	1.1
합계	91	100.0

<표 II-5> 분석전문인력 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석전문인력	91	1	28	2.37	3.30

<표 II-6> 일반 직원 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 직원 수	91	0	285	19.05	46.93

<표 II-7>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 기술통계량

분석전문인력 포함한 상근 직원 수	빈도	퍼센트
3	37	40.7
4	10	11.0
5 이상	44	48.3
N	91	
평균 (표준편차)	21.43 (47.63)	
최소값	3	
최대값	291	

- 특히, 전체 등록업체 중 72.5%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전문인력 2명 이하 업체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분석전문인력 2명 이하 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등록요건 현황을 살펴봄
- <표 II-8>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전문인력이 1명 있는 52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31개 업체가 ARS조사시스템만 사용하는 업체임

<표 II-8> 조사시스템*분석전문인력*조사실적 교차표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전체
			1명	2명	
전화면접	조사실적	조사실시횟수충족	3	2	5
		실시매출액충족	2	2	4
	전체		5	4	9
전화면접/ARS	조사실적	조사실시횟수충족	7	1	8
		실시매출액충족	9	3	12
	전체		16	4	20
ARS	조사실적	조사실시횟수충족	24	0	24
		실시매출액충족	7	6	13
	전체		31	6	37
전체	조사실적	조사실시횟수충족	34	3	37
		실시매출액충족	18	11	29
	전체		52	14	66

- 2명의 분석전문인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ARS조사시스템 비중이 가장 큼
- 게다가 분석전문인력이 2명인 ARS조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등록업체가 조사 실시 횟수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실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한 것으로 파악됨
- <표 II-9>는 분석전문인력이 1명인 등록기관의 실적을 정리한 것임

<표 II-9> 분석전문인력 1명인 등록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조사실적	빈도	퍼센트
10회 이상 합계	24	46.2
10	7	13.5
11	3	5.8
12	1	1.9
13	4	7.7
14	2	3.8
15	1	1.9
16	1	1.9
19	1	1.9
21	1	1.9
24	1	1.9
32	1	1.9
100	1	1.9
기타 실적	빈도	퍼센트
기타 합계	28	53.8
·설립기간 1년 미만으로 여론조사 실시 실적이 10회 미만인 업체	10	19.2
·매출액 충족 업체	18	34.6
합계	52	100.0

-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을 충족한 업체는 24개 업체이고, 기타 실적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8개 업체임
- 기타 실적으로는 설립기간 1년 미만인 업체로 여론조사 실시 실적이 10회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임. 분석전문인력이 1명인 52개 등록업체 중 설립기간 1년 미만인 업체로 여론조사 실시 실적이 10회 미만인 경우가 19.2%를,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34.6%로 이들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음
- <표 II-10>은 분석전문인력 2명인 등록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을 정리한 것임

<표 II-10> 분석전문인력 2명인 등록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조사실적	빈도	퍼센트
10	1	7.1
23	1	7.1
34	1	7.1
기타 (매출액 충족 업체)	11	78.6
합계	14	100.0

- 14개 등록업체 중 3개 업체만이 여론조사 실시 실적을 충족하였고 나머지 11개 업체(78.6%)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분석전문인력이 1명인 업체와 2명인 업체의 평균 등록유지기간을 살펴보면, 각각 40.79개월, 39.71개월로 비슷한 수준임(<표 II-11>)

<표 II-11> 분석전문인력수별 현 등록기관의 등록 유지기간(단위: 개월)

분석전문인력수	현 등록기관의 등록 유지기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명	52	1	64	40.79	22.31
2명	14	8	64	39.71	23.97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분석전문인력 2명 이하의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시스템 및 조사 실적 등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현행 등록요건에서 제시된 분석전문인력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 그러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혹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으로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다양한 사회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직종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이 존재함
- 그러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의 1급과 2급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표 II-12>은 사회조사분석사1급과 2급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임

<표 II-12> 사회조사분석사 1급과 2급 비교

	2급	1급
응시자격	없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연간 시험횟수	3회	1회
시험과목	필기 1. 조사방법론 I (30문제) 2. 조사방법론 II (30문제) 3. 사회통계(40문제)	필기 1. 고급조사방법론 I (30문제) 2. 고급조사방법론 II (30문제) 3.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40문제)
	실기 사회조사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실기 사회조사 분석 실무(작업형시험) *작업형시험은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사회조사 계획 수립, 조사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통계처리하여 분석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평가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이상
평균 합격율	필기 62.9%, 실기 57%	필기 59.9%, 실기 30.3%

- 사회조사분석사2급의 경우,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연간 3회 시험이 있음. 또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다소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평균 합격률이 필기는 62.9%, 실기는 57%로 합격률이 높은 편임
- 반면에 사회조사분석사1급은 응시자격부터 제한이 있음.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
- 게다가 연간 1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2급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평가함. 특히, 통계처리하여 분석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능력까지 평가함
- 이에 따라 사회조사분석사1급의 평균합격율은 필기가 59.9%, 실기가 30.3%로 2급의 합격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이와 같은 차이에 따라 2급의 경우 단기간에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기가 쉬운 반면에 1급은 상대적으로 자격 취득에 시간과 전문성을 필요로 함. 1급은 단기간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여론조사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움. 따라서 등록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난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의 급수를 고려한 등록요건이 필요해 보임
- 전체 등록업체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을 살펴보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 혹은 단체와 설립된 지 1년 이상인 기관 혹은 단체가 각각 충족해야 하는 조사 실시 실적을 충족한 업체는 51개임

<표 II-13>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빈도	퍼센트
조사실시횟수충족	51	56.0
매출액충족	40	44.0
합계	91	100.0

- 조사 실시 실적이 아닌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업체도 40개 업체로 절반에 가까움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현행 등록요건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요건 충족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음

<표 II-14> 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용조사 실시 현황

(2017. 5. 9.~2022. 10. 28.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건수					
	0건	1~4건	5~9건	10~49건	50~99건	100건 이상
91	28	8	7	20	11	17

- <표 II-14>는 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용조사 실시 현황을 정리한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표·보도용 선거여

론조사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건수를 집계하였으며, 그 외 일반 여론조사 실시 현황은 미반영된 것임

- 28개소가 여론조사 건수 0건에 해당함. 전체 중 약 31%를 차지함
- 또한, 절반에 가까운 약 47%가 10건 미만임
- 91개 업체 중 약 절반은 여론조사 실시 건수가 10건 미만이고, 나머지 절반은 10건 이상이지만 100건 이상의 실시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17개소로 약 19% 정도에 불과함

다. 현 등록기관의 등록 유지기간

- 현재 등록된 기관의 등록 유지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이 43.33개월, 최소가 1개월, 최대가 64개월로 나타남
- 또한, 본문에 표로 나타내지는 않으나 현행 등록기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몇몇 업체는 등록, 등록취소, 재등록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15> 등록 유지기간

(단위: 개월)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록 유지기간	91	1	64	43.33	22.52

라. 등록취소기관 현황

- 아래의 <표 II-16>은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취소한 사유를 정리한 것임

- 2개의 업체가 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하였고, 27개 업체가 등록취소신청을 통해 등록을 취소함
- 그리고 매출 저조, 분석전문인력 퇴사, 상근 직원 요건 미충족 등이 등록취소신청의 이유로 제시되었음
- 그러나 등록을 취소한 업체 중 업체 변경을 통해 등록한 경우 3건,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4건이 있음. 취소 후 재등록한 4건 중 1건은 다시 등록을 취소함
- 일부 업체들이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업체 변경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등록을 취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부터 취소까지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존속기간 5개월, 최대 존속기간 58개월, 평균 존속기간 29.79개월로 나타남

<표 II-16> 등록 취소사유

취소사유	빈도	퍼센트
등록취소신청	27	93.1
폐업	2	6.9
합계	29	100.0

<표 II-17> 등록부터 취소까지 존속기간 (단위: 개월)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록 존속기간	29	5	58	29.79	14.63

2. 전문가 FGI

가. 전문가 FGI 실시

-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조사업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들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경험과 현재 등록기관의 선거여론조사 실태를 파악함
- 또한,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기준 및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실 가능하고 보다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 서우석(전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하동균(케이스텍 상무), 이민호(모노리서치 이사)를 초청하여 연구진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2022년 10월 17일(월) 13:00에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음
- 전문가 FGI의 녹취록 전문은 부록에 있음

나.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

- 현재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을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통해 여전히 난립 문제 존재
- 조사결과의 질적 발전을 위해 장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 조사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다.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 방안

- 전문가들은 현재 등록요건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

등록요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래의 <표 II-18>은 전문가 FGI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분석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함. 분석전문인력은 최소한 3명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력 기준은 일차적으로 필터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여론조사 품질 향상을 위한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단 및 정기적인 관련 교육을 통해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II-18> 전문가 FGI의 핵심 내용

	전문가A	전문가B	전문가C
등록요건 (분석전문인력)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 찬성	· 3명 이상 (조사협회 회원사의 경우 크게 의미 없음)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으로 설정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 없음
등록요건 조사방법별 시스템 최소사양 기준 명시- 자동분류기능	· 시스템 최소사양에 대한 기준을 객관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 · ARS의 경우 통화 내용 녹음과 보관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보 관할 때 데이터 용량 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실제 응답한 경 우만 따로 보관하는 것인지, 스마트폰으 로 키보드를 눌러서 응답하는 경우 등 검 토필요	· 회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야 함 · 등록시 5천만원 매 출액이 이미 설정되 어 있는 상황에서 매 출액 = 조사품질 등 가 논리는 수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등록요건 (매출)	· 존속 요건 강화를 통해 조사기관의 신 뢰도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하 나 효과는 의문임 · 예컨대 매출액 기 준을 제시한다면 준 거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전 연도로 한다면, 실제	· 선거여론조사 대부 분은 정당 또는 언론 사 의뢰 · 의뢰기관인 정당과 언론사가 하도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 을 경우, 선관위가 이를 위한 별도의 제 재를 하는 것이 타당 한지 논의 필요	

	<p>는 신생 업체가 설립 이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p> <p>· 또한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 요건으로 기능할 경우, 업체 자체 재원 조사를 통해 조사 경력을 쌓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p>		
<p>등록취소</p>	<p>· 여론조사 용역 하도급의 실체가 어떠한지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움</p> <p>· 연구 용역에서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등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여론조사의 경우 의미가 있을지 의문</p>	<p>· 과도한 제재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음</p> <p>· 위반 요건 명확화. 재발시 또는 삼진아웃제 등의 적용은 검토해 볼 수 있음</p>	<p>· 권소시움은 가능하지만, 전체 하도급은 금지</p>
<p>등록기관 교육</p>			<p>· 1년에 최소 횟수를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 취소</p>

III.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조사기관등록제의 도입 이후 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부실 및 영세기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비판 받고 있는 상황임
-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선거여론 조사기관의 공신력, 조사 절차의 공정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품질 등과 관련된 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와 논설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음
- 부실 및 영세기관이 산출해 내는 저질의 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도 있음.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좋은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 간의 구별을 힘들게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는 그 효과성에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과 강화가 불가피함. 구체적으로는 규제가 불충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임.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다루는 정책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확보해야 하는데(비례성과 적정성)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는 다소 과소(過少)한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본 과제와 관련하여 시행한 FGI에서 학계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들도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그 규제의 수준이 적정·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특히 단기적으로 등록요건 및 등록취소요건의 강화, 중기적으로 등록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장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조사품질 향상이라는 시계(視界)·단계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규제정책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산출되는 편익이 유권자(국민) 전체에 넓게 분산되어 있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규제기관(여론조사기관)에 좁게 집중되어 있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선거여론 조사기관에 대한 규제로 산출되는 편익은 공정한 선거 규칙의 보호 및 유지, 사실적(factual) 정보의 산출 및 유통, 사실적 정보에 기반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 좋은 선량(選良)의 당선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질 제고 등으로 국민 전체 및 정치체제 전반에 편만(遍滿)하게 향유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짐
- 반면, 개선 및 강화된 규제의 영향을 받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규제대상 혹은 피규제기관들(조사기관등록제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시도를 포기하게 될 기관들이 해당될 것임)이 조직화하여 강력한 반대 활동을 피할 위험은 명분과 실리 양자를 모두 고려해볼 때 별로 크지 않아 보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공정선거’의 가치가 확립된 우리나라의 경우 기득권의 수호를 위한 피규제 주체들의 조직적 반발은 대대적인 사회적·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워 현행 규제정책의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음
- 오히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개선 및 강화되지 않아 규제의 과소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부정확한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말미암아 당락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후보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유권자 표심의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요동, 여론의 혼란과 분열, 사회적 불신과 동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전반적인 냉소와 무관심 확산 등은 민주주의의 질을 감쇄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그 예방과 대처가 필수불가결함

- 잘못된 정보의 유통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유포는 민의가 대표되는 투표과정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며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대의체제(representational regime)의 공신력을 저하시킴
- 조사기관 등록제의 개선 및 강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필요충분한 자격을 갖춘 등록기관이 품질 높은 조사결과를 경쟁적으로 산출하여 유권자들에게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고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미래와 주요정책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informed)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하지만 등록기관이 산출하는 조사결과의 품질이 단기간에 극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등록취소요건을 포함한 등록요건의 강화가 필수적인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 하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고 품질이 높은 조사결과를 산출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즉 ‘등록’이 일종의 정부 ‘인증’ 내지 ‘보증’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등록요건의 강화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단순히 ‘등록’이라는 절차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의 주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무 교육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피규제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어 조사결과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등록이 교육으로 후속·연결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중기적으로는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내실 있는 사후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등록된 조사기관들을 사후 관리(follow-up management)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인력과 유관 예산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현행 조사기관 등록제의 주요 요소인 등록요건, 등록취소요건과 더불어 현재 취약한 상태에 있는 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현행 규제 강화는 1) 등록요건 강화, 2) 등록취소요건 확대, 3) 등록기관 교육 의무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음

1. 등록요건 강화

- 등록요건 강화 방안으로는 1) 분석전문인력 및 상근직원 숫자의 확대 혹은 그 자격의 고도화, 2) 조사방법별 시스템 최소사양 기준 명시, 3) 등록된 조사기관의 존속요건 추가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첫째, 분석전문인력의 기준을 높이는 방법은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을 증원하는 방법과 전문인력의 자격을 고도화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음
- 현행 등록신청 요건은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으로 되어 있음.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건은 분석전문인력의 숫자임. 일반 상근 직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아님
- ‘분석전문인력’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를 말하는데, 현행 조항만으로는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특히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의 급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분석전문인력의 증수(增數) 혹은 자격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현황 분석 결과, 분석전문인력 2명 이하인 등록업체의 경우 조사시스템과 실적 등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난 점을 고려해볼 때 분석전문인력의 최소 수준은 2인 정도로

추정됨. 2인 구성의 경우, 1인은 전문 분석 업무를, 다른 1인은 일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것임

- 그런데 여론조사의 전문 영역을 크게 조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으로 나눈다면, 1인이 전문 분석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
- 본 과제와 관련하여 시행한 FGI에서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분석전문인력의 숫자와 관련하여 3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안이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분석전문인력의 숫자를 3인 이상으로 강화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함. 3인 구성의 경우, 각 1명이 전문 영역을 담당하거나 2인은 전문 분석 업무를, 다른 1인은 일반 보조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분석전문인력’의 일정한 ‘질’ 확보를 위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급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음. 2급의 경우 단기간에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기가 쉬움
- 반면에 1급은 상대적으로 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1급을 요건화할 경우 단기간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여론조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짐. 따라서 등록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의 급을 고도화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아예 ‘분석전문인력’의 정의(定義)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함. 즉, 현행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or)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and)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라고 재정의하여 ‘분석전문인력’이 일정한 급수(級數)와 경력을 동시에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리하면,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래 세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요건의 강도로 보아 1안 < 2안 < 3안 < 4안임. 1안은 최소한의 강화 방안이고 4안이 가장 강력한 방안임
(1안)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2인 이상
(2안)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3인 이상
(3안) ‘분석전문인력’을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로 재정의한 후 위의 1안과 2안에 각각 적용하는 안
(4안)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을 포함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 2인 이상
(사회조사분석사 1급 보유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자임)
- 둘째, 조사시스템 혹은 시설 등 하드웨어 및 인프라 관련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 현행 요건은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다소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 별로 시스템의 최소사양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전화면접조사시스템’은 현재 모두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전화면접) 방식이므로 최소 기본 사양으로 CATI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으로 자동 녹음 기능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분류기능을 추가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CATI의 사양이나 버전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CATI와 연동되는 PDS(유효번호를 면접원에게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는 버전에 따라 투자비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시하여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도 자동 녹음 기능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분류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특정한 시스템(예: 전화면접조사시스템)을 요건화하면 특정한 조사시스템을 보유한(혹은 보유하지 못한) 조사기관, 혹은 특정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는(혹은 사용하지 않는) 조사기관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structurally discriminate) 결과를 낼 수 있어 규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며 추후 정책순응을 확보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정리하면,
 - (1안) 현행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방안
 - (2안) 자동 녹음 기능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분류기능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최소사양을 추가적으로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 현행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요건은 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셋째, 등록된 조사기관의 존속요건을 강화할 여지가 있음
- 현행 요건은 “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여론조사는 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또는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음
- 실적 및 매출액과 관련하여,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현행 등록 요건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요건 충족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으로 선택적으로

-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론조사 실시 실적과 매출액”으로 동시에 요구하여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매출액 기준 자체를 인상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인상 폭은 현행 5천만원을 50% 인상하여 7천5백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함
 - 이상을 정리하면,
 - (1안) 현행 유지(실적 10회 이상 혹은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2안) 여론조사 실시 실적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3안) 여론조사 실시 실적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고 매출액 기준을 7천5백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
 - 단, 여기서 등록요건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존속요건은
 - (1안) 매년 일정하게 존속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심사하고 결정하는 안(단 심사 대상 기간이 등록 후 1년 이상이어야, 즉 9월에 등록했는데 익년 5월에 심사 받는 거는 무의미), (2안) 등록기관 별로 신규 등록 후 1년 주기로 심사받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등록취소 요건 확대

-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등록취소의 요건을 추가하거나, 등록취소 과정을 더 신속하게 하거나, 재등록이 더 어렵도록 만드는 등의 방안을 의미함
- 현행 등록취소 요건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정됨

- 이 중 1)항과 3)항은 자명하고 적정하므로 변경이 불필요함
- 2)항은 등록 이후 등록기관의 상태에 모종의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 요건 미충족 현상이 초래된 것을 뜻함. 예컨대 매출 저조, 분석전문인력 퇴사, 상근 직원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등록 요건 미충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어떤 이유로든 등록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등록취소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경우 재등록이 더 힘들도록 복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적용되는 재등록 금지 기간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인데 이를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재등록 금지 기간은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3년, 대부업 5년 등인데 이들에 비해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최소 3년 정도가 적용되어야 적절해 보임
-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뿐 아니라 향후 재등록 신청을 완전히 불허하고 등록 관련 위반에 따른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징벌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상을 정리하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혹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1안) 현행 유지(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 (2안)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안) 현행 유지(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2안) 과태료 100만원 부과,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 등록 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를 확실하게 하여 불법 행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그래야만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법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임
- 가장 중요하게는 현행 세 가지 요건에 더하여 여론조사 용역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하도급 금지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하도급은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하여 설문, 즉 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와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스템을 임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 즉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여론조사 업무를 하도급을 주는 것임
- ‘하도급’의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하도급(예: 컨소시엄 구성)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금지 요건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그러한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이 발생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일종의 ‘삼진아웃제’처럼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상을 정리하면,
 - (1안) 현행대로 하도급을 문제 삼지 않는 안
 - (2안) 조사 업무 및 시스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예: 30% 이상)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안
 - (3안) 조사 업무 및 시스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예:30% 이상)을 금지한 후 실사를 통해 반복적 적발(예: 3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안

- 그러나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의 의뢰 주체인 정당이나 언론사들이 하도급 관행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를 문제 삼아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과도한 규제 로 비쳐질 여지가 존재함(FGI 결과 참고)
- 동시에 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탐지(detect)하거나 사후에 적발해 내기가 힘들고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지 않게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인력 및 재정 확충이 필요함
- 이상에서 제안한 강화된 등록요건과 확대된 등록취소요건을 적용 하는 데 있어 피규제 대상 기관들이 적절히 적응 및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유예기간의 길이는 2024년 4월 10일에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1년 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 의무화

- 모든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여 선거조사기관 등록제가 ‘등록’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충실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현재 ‘등록’이 ‘인증’과 동일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등록기관들의 인식 개선과 자체 역량 강화를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 이수를 모든 조사기관에 의무화하고 수강의무자, 미이수시 받게 될 불이익, 이수 실적 등록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안내,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제도적 지식, 윤리적 측면 등도 필수 교육으로 의무화하여 여론조사의 정치적 과장과 사회적 영

향력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 스스로 좀 더 전문가적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등록기관의 팀장(대표)급/실무자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교육 의무화 규정을 등록취소와 연계하여 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이렇게 하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조사기관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며 교육 시행의 효과성도 제고될 것임
- 중기적으로 등록기관의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록과 관련된 규제가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요건 확대, 교육 의무화 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등록 이후 기관의 활동에 관하여 체계적인 사후 검증과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함
- 사후 검증과 점검은 조사기관의 상황과 자격에 변동이 생겨 요건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등록취소로 연결하거나, 반대로 등록이 취소되었던 조사기관이 재기하여 재진입·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필수적임. 또한 하도급 금지 요건을 추가할 경우 실제 하도급 여부를 탐지 및 적발하는 데에도 정부의 검증과 점검 능력과 활동이 중요함
- 사후 검증과 점검이 일회적인 판정 활동에 그치기보다는 검증과 점검의 결과에 기초하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전반적 혹은 맞춤형 멘토링을 겸한 컨설팅이 이루어져 규제 대상 기관들의 역량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야 조사기관들도 검증과 점검을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아닌, 유익하고 건설적인 학습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규제주체와 규제대상 간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효과적이고 상호적인 검증과 점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여

론조사심의위원회 자체의 검증 능력과 권한이 신장되고, 그 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검증과 점검을 위한 인력이 보강되고 적절한 업무 관련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러한 사후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적절히 부여되고 예산이 추가 배정될 필요가 있음

- 인력 보강, 권한 강화, 예산 지원 등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와 같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와 정책 환경에서는 단기간에 급속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등록기관의 역량과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요건 확대, 기본 교육 의무화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강화라면,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교육·훈련 확대, 일반 시민 의식 개선, 전문지식 축적 노력, 언론 및 시민의 사실확인 능력 제고 등과 같은 방안은 좀 더 거시적, 장기적,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격이 부족한 기관이 스스로 도태되고 저품질의 조사결과가 언론과 유권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기각·거부되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를 둘러싼 생태계 전반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규제정책만으로 조사기관의 적격성을 심사·관리하고 조사결과를 점검·확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음. 유권자 스스로 부적격 조사기관의 저품질 조사결과를 외면하는 정치문화와 정치풍토가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민-학-언-산-관(民-學-言-産-官) 간의 건설적이고 협업적인 다부문 협업 정책생태계(intersectoral collaborative policy ecosystem)가 구축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유권자의 인식 개선과 民度 제고, 학계·연구계의

전문지식 축적과 적절한 판단 기준 제시, 언론 관계자들의 유능하고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인 보도, 조사업체들의 역량 강화와 고도의 윤리의식 함양, 정부의 효과적이고 역량강화적인 규제정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생적이고 협업적인 생태계가 구축 및 발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다부문 협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유권자와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인 조사기관 선별과 여론조사 자료의 품질 변별이 가능해짐. 이를 통해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고 당파적인 선거여론조사는 자정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驅逐될 것임. 나아가 혁신적인 개선 방안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도출, 시행될 수 있을 것임

IV. 등록기관의 선거여론조사 자료 품질 향상 방안

1. 선거여론조사자료의 품질 향상의 필요성

- 현재 선거여론조사 등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등록’과 ‘인증’을 동일시한다는 데에 있음
-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선거여론조사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많음
-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요건 확대, 등록 교육 의무화 등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단기적 방안이라면, 등록기관이 산출한 조사통계의 품질 향상은 중장기적 방안을 통해 가능함
- 전자가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이지만, 후자는 포지티브 방식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제도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를 검토하고자 함

2. 참고 사례

가. 통계품질진단제도

- 통계품질관리제도는 통계법 제9조에 근거함

통계법 제9조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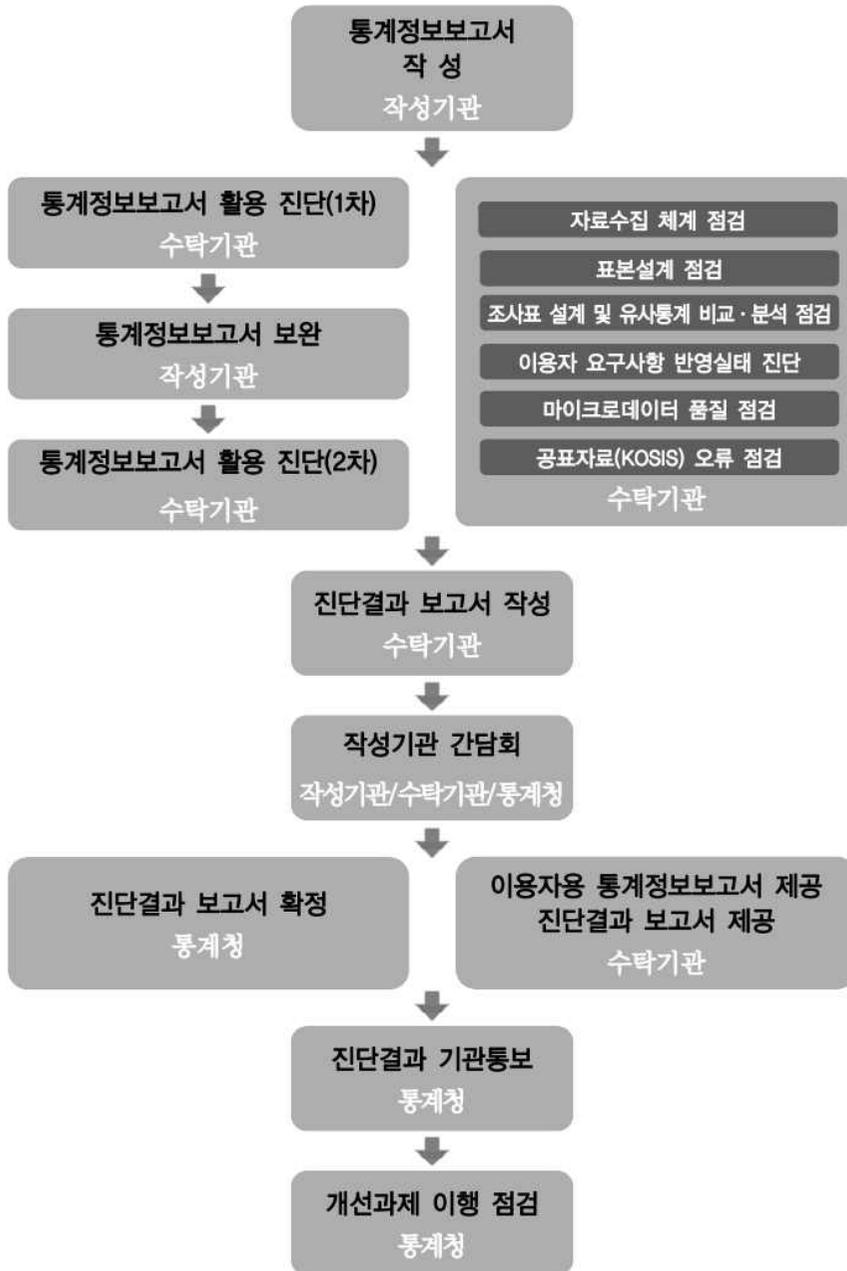
통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계품질관리제도는 통계이용자들에게 통계를 사용하는 데 적합하도록 생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통계이용자에게 만족을 주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보급·관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합한 체계를 말함
- 통계품질관리는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해 더 나은 통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이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표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숙지하고 따라야 함
-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업무활동이 통계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함
- 통계자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수집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원이나 보고자도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관리교육이 필요함. 교육과 훈련 역시 품질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됨
- 이러한 수준 높은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통계품질진단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승인통계이고, 국가승인통계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유용성 또는 모집단으로 활용성이 높거나, 국제 비교를 위해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주요 통계를 먼저 통계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에서 공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 작성 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 등을 진단하고 통계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

여 품질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지원까지 하는 과정을 포함함

<그림 IV-1> 통계품질진단 절차



출처: 통계청. 2022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제도

- 통계품질관리제도가 국가승인통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요 통계의 품질을 향상하는 품질관리제도라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학술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 학술지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평가 제도를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술지는 등재후보, 등재, 우수등재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함
-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 등급에 기반한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함
- 신규평가는 현재 미등재 학술지(일반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등재후보 자격 부여 여부를 심사함
- 계속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등재후보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등재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함
- 재인증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우수)등재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평가함
- 학술지 평가를 위한 신청 자격은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논문당 심사위원수,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및 공지여부, 논문 투고 다양성,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등 일정 수준의 학술지가 갖추어야 사항을 충족해야 부여됨
-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뉨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청 자격 검토 및 체계 평가에 관한 자체평가 내용을 연구재단이 확인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평가와 학문 분야 특수 평가로 관련 전문평가단이 온라인 평가를 통해 평가함
-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마지막 단계는 종합평가로 최종적으로 학술지발전위원회 본위원

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함

○ <그림 IV-2>는 학술지 평가점수와 판단 기준을 보여줌

<그림 IV-2> 학술지 평가점수와 판단 기준

획득점수		80점미만	80점 이상 85점미만	85점 이상
학술지구분	평가구분			
일반학술지	신규평가	탈락(등재실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등재후보학술지 탈락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등재학술지 유지

출처: 한국연구재단. 2022.

V. 결론

1.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도 강화 방안

-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 및 조사자료의 품질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는 등록요건 강화, 등록취소요건 확대, 등록기관 교육 의무화임
- 먼저, 등록요건 강화는 ① 분석전문인력, ② 조사시스템, ③ 실적 및 매출액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참조, <표 V-1>). 관련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함
- 분석전문인력 강화는 요건의 강도별로 1안(최소한의 강화 방안) < 2안 < 3안 < 4안(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시함
 - (1안)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2인 이상
 - (2안)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3인 이상
 - (3안) ‘분석전문인력’을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로 재정의한 후 위의 1안과 2안에 각각 적용하는 안
 - (4안)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을 포함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 2인 이상 (사회조사분석사 1급 보유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자임)
- 선거여론조사의 사회적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계획을 비롯한 전체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이 요구됨. 현재는 최소한 수준의 조사분석능력을 자격증 혹은 실무경험으로 요

구함

- 사회조사분석사 2급은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인 반면에, 사회조사분석사 1급은 '조사 계획 수립, 조사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통계처리하여 분석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필요로 함. 따라서 조사분석전문능력에 자격증과 실무경험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방안 혹은 종합적인 조사분석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 요구가 필요함
- 조사시스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현행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방안
 - (2안) 자동 녹음 기능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분류기능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최소사양을 추가적으로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 실적 및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현행 유지(실적 10회 이상 혹은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2안) 여론조사 실시 실적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3안) 여론조사 실시 실적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고 매출액 기준을 7천5백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
- 그리고 현행 요건 중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
- 특히, 분석전문인력의 요건 강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시스템 강화는 업계 현실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분석전문인력이나 실적 혹은 매출액 조건에 비해 우선 순위가 떨어짐
- 다음으로, 등록취소 요건 확대와 관련하여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혹은 등록요건 미비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

사와 관련된 범죄행위, ③ 하도급 금지 요건 위반 등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참조, <표 V-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혹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해 다음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현행 유지(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 (2안)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는 등록 이후 등록기관의 상태에 일부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된 경우를 말함. 매출 저조, 분석전문인력 퇴사, 상근 직원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현행 유지(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 (2안) 과태료 100만원 부과,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안) 현행대로 하도급을 문제 삼지 않는 안
 - (2안) 조사 업무 및 시스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예: 30% 이상)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안
 - (3안) 조사 업무 및 시스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하도급(예:30% 이상)을 금지한 후 실사를 통해 반복적 적발(예: 3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안
- 다만 하도급 적발을 위한 행정적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함
- 제안한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요건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일정 기간

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임. 유예기간의 길이는 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1년 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기관 교육 의무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 <표 V-3>)
- 구체적으로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아울러 조사윤리 교육과 조사실무 교육을 통해 조사 전문가의 소양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함
- 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등록기관의 팀장(대표)급/실무자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교육 의무화 규정과 등록취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조사기관들의 인식 개선 및 교육 시행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표 V-1>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록요건 강화)

항목	방안			
	1안	2안	3안	4안
인력	분석전문인력 2인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분석전문인력 3인 (사회조사분석 사 자격증 보유자 혹은 2년 이상 조사경험자)	‘분석전문인력’ 을 '사회조사분석 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and)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로 재정의한 후 위의 1안과 2안에 각각 적용하는 안	분석전문인력 2인 (사회조사분석 사 1급 보유자 + 사회조사분석 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사경험자)
	1안		2안	
시스템	현행을 변동 없이 유지하는 방안		자동 녹음 기능과 피조사자 접 촉현황 자동분류기능 등을 포함 하여 시스템의 최소사양을 추가 적으로 적시하여 구체적으로 요 구하는 방안	
	1안		2안	
실적 및 매출액*	1안		3안	
	현행 유지(실적 10회 이상 혹은 매출액 5천 만원 이상)		여론조사 실시 실적 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여론조사 실시 실적 과 매출액을 동시에 요구하고 매출액 기 준을 7천5백만원으 로 인상하는 안(실적 10회 이상과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		

*구체적인 실적과 매출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 효과성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음

<표 V-2>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록취소 요건 확대)

항목	방안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등 록한 경우 혹은 등록요건 미비	1안	2안	
	현행 유지 (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선거에 관한 여 론조사와 관련 된 범죄행위	1안	2안	
	현행 유지 (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 1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즉각적인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 기간 3년 적용	
하도급 금지 요 건 위반*	1안	2안	3안
	현행대로 하도급을 문제 삼지 않는 안	조사 업무 및 시스 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 인 하도급(예: 30% 이상)을 선언 적으로 금지하는 안	조사 업무 및 시스 템에서의 하도급을 분명히 정의하고 상시적이고 전반적 인 하도급(예:30% 이상)을 금지한 후 실사를 통해 반복 적 적발(예: 3회) 에 대해 즉각적으 로 등록을 취소하 는 안

*하도급 적발을 위한 많은 행정적 비용이 수반됨

<표 V-3>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관 관리·감독 강화 방안 (교육 의무화)

항목	방안
등록기관 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의 의무화 · 수강의무자 (조사기관의 규모에 따라 팀장(대표)급/실무자 등을 명시) · 미이수시 불이익 명시 · 법, 제도에 대한 지식, 윤리 교육 등 교육 강화 · 교육 의무화를 통해 등록취소와 연계함

2. 선거여론조사 자료 품질 향상 강화 방안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의 강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런데 최소한 요건을 제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단기적인 대응 방안임
-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선거여론조사 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①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후검증 강화, ② 품질진단/인증제 실시, ③언론인 대상 교육과 홍보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참조, <표 V-4>)
-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후검증 강화는 자체 조사자료 검증 인력과 예산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임
- 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선거여론조사 자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사과정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인증제는 등록기관의 산출 자료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등급을 부

여하는 제도임

<표 V-4>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 방안

	내용	비고
사후 검증 강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체 검증 인력과 예산 확대	조사분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자료 사후 검증 내실화
품질진단/인증제	제3기관을 통한 정기 품질 진단과 인증제	통계청과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업
언론인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	선거여론조사 관련 언론인 교육연수 선거여론조사 자료 분석 브리프 발간	관련 각종 단체와의 협업

- 물론 이러한 제도는 여론조사심위원회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통계품질제도 운용 경험이 풍부한 통계청이나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이러한 제도 실시 결과가 언론 보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언론과 협조 및 홍보 활동이 필수적임
- 마지막으로 선거여론조사 품질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논란이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이 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담당 언론인에 대한 관련 분야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낮은 품질의 선거여론조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교육과 결과 이해 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각종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있는 각종 통계와 정책 브리프와 유사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모범적인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전파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고문헌

이혁우. 2021. 규제관리론. 윤성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2.

<https://www.nesdc.go.kr/portal/content/onvy/list.do>

통계청. 2022. 2022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한국연구재단. 2022. <https://www.nrf.re.kr/>

<부록 1> 전문가 FGI 녹취록

일시: 2022년 10월 17일(월) 13:00

장소: 온라인 회의 (Zoom)

참석자: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민호 (모노리서치 이사)

최지영 (고려대 사회학과 강사)

하동균 (케이스태트 상무)

사회자

오늘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오늘 논의를 녹취록으로 남겨야 해서, 회의 내용을 녹화와 녹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남겨야 해서 화면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음성 부분은 저희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 일동

네 좋습니다.

사회자

여러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등록기관 감독 강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방향들, 구체적인 기준이나 추가로 생각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잠깐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파일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는 선거여론조사 등록기간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연구고요 지금 있는 제도보다는 조금 더 허들을 좀 높이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권 포함해서 여러 사회 부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선관위에서 특히 이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어제 김OO 사장님이 한번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봤는데 이게 여론조사 OO이 아마 김OO 씨 그런 분인데, 보시면 이제 안심 번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사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면 선거여론조사 등록제와 관련한 기준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열심히 해서 또 활동하셨고 실제 조사를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전문가A께서 혹시 가능하실까요.

전문가A

사실 이제 저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저는 이제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 2년 정도 했었고 여러 선거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만들 때는 좀 너무 정부의 과잉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는데 한국의 현실을 보니까 현재 요즘에 느끼기로는 규제라고 하는 것이 처

음에 만들 때는 상당히 뻑뻑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상당히 터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규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새로운 개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한번 돌리시죠. 전문가B께서 혹시 의견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B

예. 사실 저도 저 내용을 페이스북 친구로 되어 있는 분이 올려놓고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조사기관들도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조사를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강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존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아시겠습니까마는 인력도 굉장히 3명이면 되는 수준, 매출액도 5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 수준,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낮은 거죠. 보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조사기관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기에 과연 이 허들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높인다고 해서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양질의 조사기관만 남을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좀

의구심,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인력 수를 갑자기 많이 높일 수도 없고요. 매출액이라는 것도 사실 5천만 원이든 그 이상이 됐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증해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다 믿을 만해라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약간 우려가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열심히 해서 결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화 방안 연구를 하시는 사회자 교수님 으로서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굉장히 숙제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전문가C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C

네. 지금 사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협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기관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 기관이 신뢰성을 위한 부분에서 조사기관으로서 의 의식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문성을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든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조사기관으로서 그 인력들이나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렇게 또 전문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확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현재 등록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저도 전문가B님 하고 같이 조금 문턱이 아직은 좀 더 낮은 거 아니냐.

지금 91개라든지 아니면 지금 몇 개인가요? 예. 기관이 등록된 걸로 확인했는데 사실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용으로 진행하는 곳은 이 숫자만큼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사기관들이 이 등록제 등록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나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지금 비치는 것 같아서 저도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관리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적인 부분들에는 선관위에서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서로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조사기관의 대표라든지 책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사례에 대한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선관위 차원에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좀 번거롭겠지만 조사기관들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된 기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실시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문가B께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A께서도 이제 등록제의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 당시 분위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 이 기준을 그냥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솔루션은 저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C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이나 점검 혹은 관련된 조사 회사의 역량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가야 할 텐데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이제 담으려고 합니다만 당장은 아주 쉽게 허들을 높이는 방향이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허들을 넘어서면 마치 선관위에서 이걸 인증을 해준 것처럼 잘 못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제3의 기관이나 학술단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하거나 통계 품질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딱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허들을 어떻게, 이상적인 허들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향하는 바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사 업계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를 그냥 공유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서 91개일 당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두 개 더 플러스 됐다고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기관이 최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인력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조사분석 전문 인력이 이제 한 명,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명 이상만 두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인 곳이 15.4% 이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반수가 넘는 데가 이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충족하고 조사 횟수가 한 반 혹은 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유지와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취소 신청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이제 한 29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등록도 취소 기간도 전체적으로 길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이 허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바를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허들 정도가 현실에 비춰서 조금 타당한, 그런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순서를 좀 거꾸로 전문가C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전문가C

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자문회의를 할 때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신생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조사기관으로 등록되는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기준들을 이제 세우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신생 조사기관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고 선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너무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사실 매출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신생 업체들은 사실 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사분석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의 최소 인력 수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하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분석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분석 인력 인원들이 사실 한두 명이 퇴사하더라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력들은 계속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명이라고

보면 비선거기간 때 없다가 선거 기간 때 또 잠깐 뽑아서 그냥 기본적인 교육시켜서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 분석 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인원을 좀 지정하자라면 한 3명 정도로 보면 지금 현행 1명에서 3명 정도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세 명 정도 있어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있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겠죠. 혹시 전문가B께서 관련돼서

전문가B

우선 분석 전문 인력의 정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분석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또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기관에서 결과 분석 업무라는 거는 연구 부서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연구원들이 테이블을 받아서 보고서를 쓰는 인력이 있고요.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주는 전산 프로세스를 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둘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어떤 기관들은 한 연구원이 그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 업무를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전산팀에서 하는 업무와 연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인력이 작은 경우에는 그 두 업무를 합쳐서 진행하는, 한 사람이 하는 일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구분된 업체들 같은 경우하고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전문가C님이 주로 ARS 조사를 주로 하시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인력 관련된

기준은 전화 면접 조사를 주로 하는 조사기관으로서는 허들 조차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기관들은 최소 5명 이상 10명 가까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ARS 업체와 전화 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의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제가 지금 ARS 조사와 전화 조사의 어떤 품질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직 구성 자체가 두 조사 특성에 따라서 워낙 규모의 차이가 심하므로 이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전화 면접 조사를 주관하는 업체로서 의미가 없는 숫자라서 이걸 한 명을 3명으로 하든 5명으로 하든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C

예

전문가B

물론 증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두 기관의 성격이 워낙 달라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ARS 업체에 대한 기준만 상향시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기관의 여기서는 이제 자료로는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사님 혹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ARS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지만 사실은 ARS 조사만을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전문가B

현실적으로 사실은 ARS와 전화 면접을 병행하는 기관이 있고요. ARS만 하는 기관이 있고,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는 기

관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조사협회 같은 경우는 ARS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협회에 포함된 기관들은 일단 ARS 조사는 공식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한다든지 또는 선거 여론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를 ARS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예 그래서 한국조사협회의 전체 자료를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정확한 회사별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한국조사협회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분석 인력이 명확하게 얼마 정도 있는지 분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A께서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전문가A

예. 일단 저는 이 조건을 지금 상향시키는 것의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효과라도 객관적 기준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걸러내는 장치가 작동할 수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는 사실은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여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인원의 규모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해서 빠져나갈 방법들은 충분히 보완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런 규모를 그 어떤 기준을 높인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조사기관들에 대한 사회의 불신,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냐는 부분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지식 정보를 생산하는 문제이고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것은 평판으로 작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각 조사기관들 꼭 ARS냐 아니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각 조사기관들의 평판을 축적되도록 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기관들이 이제 자료를 등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분석 같은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되고 그 결과들이 이렇게 공인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공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가C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허들을 높이는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어떤 점검 혹은 각종 형태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조사기관의 어떤 신뢰도 높이고 통계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이거는 중장기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A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학술지 평가는 여러 연구자의 취업이나 업적 평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학술지 평가가 사실은 한 번만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기간을 갖고 평가를 받아

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넘으면 그 등급을 또 부여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통계 품질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품질진단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통계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거는 선관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외부 조직이나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이나 학술단체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문가A

저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덧붙이면, 저도 열심히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게 그럴 행동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일단은 예산 문제가 아마 될 텐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크면 큰 액수일 수도 있지만,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액된 예산을 선관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투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은 선관위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부실한 조사를 양산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못하면 이제 불량품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요 현안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더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필요성에 관해서는 많은 선생님이 동의하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실효성이나 그다음에 긴급성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선생님 의견을 다 이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선생님들 저희 연구진 포함해서 말씀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B

예. 아까 사후 검증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어떤 기능이나 인력을 좀 더 충원시켜서 같이 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력들이 그런 어떤 사후 검증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사후 검증이 과연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공적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저희 민간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민간 영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 그런데도 사후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떤 경우는 조사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조사나 심의된 결과를 보게 되면 기준만 지켜서 나온 결과에 대한 품질을 진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튀는 조사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이미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오차라는 게 있는 조사에서 이 조사가 이 시기에 나왔던 다른 조사에 대비해서 많이 다르네라고 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봤자 콜백이라든지 또는 설문지의 어떤 편향성이 있었는지 라든지 또는 전화번호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정도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팀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 품질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 전문가A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충원된 인력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냐는 부분들은 사실 좀 또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선택지를 그냥 내는 그런 방향이고요. 자체 인력 충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더 가야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 중의 하나는 통계청 품질 진단이나 아니면 아까 학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등급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등급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그대로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전문가C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전문가C

네. 저는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아까처럼 조사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하고 나서 그냥 이제 등록만 하면 끝이라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선관위 차원에서 좀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사후 검증에 대한 부분도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둘째라고 생각하더라도 조사기관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조사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들이 사후에도 검증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할당된 셀을 좀 더 충실하게 채운다든지 뭔가 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그런 이제 자발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자발적인 게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조금 약간 그런 타의인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사실 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이제 기법을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되 그게 사실은 자발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관위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부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면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전문가C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실무자, 책임자 정도 분들이 저는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좀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자들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조사 회사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대표님들이 조사 이거 정기적인 교육을 받으실까요.

전문가C

사실은 그게 귀찮으시면 예를 들면 선거 여론조사 등록을 안 하시겠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검증을 위한 본인들의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됐다라는 거에 대한 뭔가 좀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기관 등록을 하고 실제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 때만 잠깐 한다든지 이런 쪽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회자

등록 취소는 이제 전문가A님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A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직접 등록 취소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도 어떤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하자 그런 것도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좀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그게 실효성 있는 검증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제 손에 명확하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확신은 없구요. 일단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좀 짐작은 전화로 이루어지는 많은 조사에 대해서 로그 데이터 메타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떤 패턴이라든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의 유형을 우리가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정말 가능한지는 저도 그거는 모르구요. 근데 어떤 그런 정도의 노력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품질 진단을 계속한다는 것을 통해서 조사 기관들에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경과 조치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과거의 모든 그거를 갖고 검증

을 해보자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 나가겠다.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실제로 이제 도입해서 예비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그리고 한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실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들도 있지만,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부실한 조사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언론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언론인들 처지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했으니까 라는 항상 이제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언론인들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 조사기관의 평판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신을 갖고 검증할 수 있는, 검증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책임을 공유한다는 자세로 보도를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B

저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교육 부분인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한OO과도 조사를 해보고 OO일보와도 조사를 해보면 같은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나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언론회사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내부 어떤 정화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안을 굉장히 이상한 문구나 이상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언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한테 고객이기 때문에 문구에 대한 자유도가 사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가 원하는 스타일로, 특히나 조사기관이 작고 또 언론사도 영세한 언론사 같은 경우라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들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교육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특정 국회

의원이 의무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내는 법안을 지금 그때 열심히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사실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는 웬만한 조사기관들은 다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따로 의무적으로 시킬 만한 정도 특히 대표님들이 와서 교육을 해야 할 만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신생 업체라든지 또는 사업 기간이 얼마 안 되거나 담당자들이 경험이 좀 적은 경우들은 수시의 교육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희망자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간혹 설명회들을 개최합니다.

특정 어떤 법안이나 제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조사기관의 어떤 의무나 강제성을 갖는 건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후 점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후 점검도 저는 매우 필요한데 저희가 이 조사 회사의 난립 또는 조사 회사의 품질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특정 선거 전에 갑자기 생겼다가 선거 후에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문제를 좀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사후에 점검하는 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선거가 끝나고 폐업했거나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기관명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후 점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서 아주 세밀한 것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능성이 있는 여러 부분은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혹시 좀 추가로 더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진 포함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들 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A

예.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처럼 그런 거가 지금 좀 선거를 겪으면서 전형적인 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뗀다방처럼 나와서 부실 조사를 양산한 다음에 책임질 주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들 사실 언론인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규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이 돼야 선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사실 기준 만들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데 언론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 특히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조금 보이는 현황들을 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피하면서 실제로는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관위 등록 기준이 과연 지금 대부분은 적합성이 있게 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혀 규제나 그런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실제로는 정치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조사들의 사례들이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진 선생님들은 어떠신지요.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거를 잘 녹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행 방안이 있는지를 보고서를 좀 잘 만들어볼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늦게 진행되는 거라서 원래 좀 시간을 갖고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조만간 다른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정규인력

No.	정규직 수
1	25
2	90
3	260
4	53
5	177
6	78
7	55
8	305
9	229
10	95
11	35
12	250
13	308
14	102
15	63
16	20
17	40
18	56
19	45
20	21
21	50
22	91
23	46

<부록 3>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사업

I 사업개요

1. 사업명: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사업

2. 사업목적

- 정부정책 수립·평가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진단하여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와 4기('20~'24년) 국가통계품질관리 체계개선 계획에 따라, '22년 70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통계 관리 및 품질 향상 도모

<참고> 제4기('20~'24년)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개선 계획('19.12.17.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및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보고('20.1.15.)

◇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통계에 대한 통계정보보고서(통계방법 및 품질정보)를 작성하고, 통계정보보고서 및 통계 결과물 등을 전문기관이 심층진단, 통계청이 최종 확정

- 조사, 보고, 가공통계의 주요통계 약 340여종에 대하여 매년 70종 내외씩 진단 계획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진단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이 정기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진단결과 도출

3. 사업예산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위탁사업비 예산: 2,165백만원*

* 진단사업의 품질진단 전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21년대비 705백만원 증액)

4. 사업범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업내용: 주요 국가 통계 70종*에 대한 품질진단

* 【붙임1】 2022년 진단대상통계(70종) : 세부리스트 참고(계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성중지 및 승인취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계 변경 가능)

<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종수 >

(단위 : 종, 개)

작성기관별(기관수)	합계	작성방법별		
		조사	보고	가공
중앙 행정 기관 (15)	45	40	1	4
통 계 청 (1)	7	4	-	3
이 외 기 관 (14)	38	36	1	1
민 간 지 정 기 관 (22)	25	21	-	4
합 계 (37)	70	61*	1	8

* 전수조사 10종, 표본조사 51종

5. 사업방식

계약방법(민간위탁): 수의계약*

○ 통계청 고시 제2020-430호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

수탁사업자

○ 사업자명: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101-82-05115

○ 법적근거: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예산 활용계획 예시 】

비 목	산출금액 (천원)	구성비 (%)	산출내역 (원)	비 고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표본전문가				
- 기타				
2.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시의여비만 계상 *보고회 참석, 자료수집 체계 점검 등
- 유인물비				
· 프린트				*보고회, 간담회 자료 등
· 인쇄				*간담결과 및 종합보고서 등
· 문헌복사비				*과거 진단보고서 등
- 전산처리비				*사무용품, 컴퓨터 수리비 및 소모품
- 회의비				
· 회의비				*보고회, FGI, 작성기관 간담회 등
· 자문료				*표본진단지문, FGI 등
- 지급임차료				*회의실 임대료 등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자료수집, FGI 등
· 전화사용료				
· 우편료				
3. 순용역원가				*인건비+경비
4. 일반관리비(0.0%)				*순용역원가의 6%이내
5. 이 윤(0.0%)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이내
6. 총 원 가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7. 부가가치세				*총원가×10%
8. 총 액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작성

<부록 4>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컨설팅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2-095-2호(G2B20220820133-00)

용역 입찰 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컨설팅 용역	예 산 (부가세 포함)	37,309,22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2.8.26. 09시~ 2022.8.30.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2.8.26. 09시~ 2022.8.30. 12시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2.11.30.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2.9.6. 14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2.9.5.(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0)]로 신고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